

제4장 예산 이용·전용·이체사용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

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·전용·이체사용한 것은

1. 예산이용(0 건)	0 원
(1) 일반회계는(0 건)	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		
총괄은(0 건)	0 원
2. 예산전용(4 건)	516,200,000 원
(1) 일반회계는(4 건)	516,200,00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		
총괄은(0 건)	0 원
3. 예산이체(396 건)	811,849,296,460 원
(1) 일반회계는(274 건)	798,198,623,66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		
총괄은(122 건)	13,650,672,800 원 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